

교원인사관리규정

(제정 : 2020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」 및 「교원인사규정」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구분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① 교원은 전임교원,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③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, 명예교수, 특임교수, 겸임교수, 객원교수, 초빙교수, 연구교수로 구분한다.

제2장 전임교원

제3조(정년계열)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(이하 “정년계열교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교수: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원
2.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학협력으로 특성화한 교원
3. HK교수: HK연구단 소속 교원

② 정년계열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4조(비정년계열)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(이하 “비정년계열교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강의중심교수: 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주로 담당하는 교원
2. 연구중심교수: 연구 및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교원
3. 산학협력중점교수: 산학협력으로 특성화한 교원
4. 외국인교수: 외국어 또는 전공 분야의 수업을 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

② 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」으로 정한다.

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9.1.>

제5조(특별채용)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교원인사규정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6조(연구년제) 전임교원은 연구성과를 높이고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원연구년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7조(소속변경) 전임교원은 학사단위구조개편 등에 따라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」으로 정한다.

제8조(겸직) 전임교원은 교내 타 대학(원) 및 학과 또는 교외 기관 및 산업체 등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전임교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 <개정

2024.3.1.>

[조명변경 2024.3.1.]

제8조의2(업적평가 계열구분)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계열은 소속 대학, 학과 및 전공분야에 따라 인문사회계열, 이공계열, 예술계열로 구분하며, 「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」 제10조제1항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8.31.]

제3장 강사 및 비전임교원

제9조(강사) 강사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강사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10조(비전임교원) 비전임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비전임교원 임용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1조(준용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「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」 및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②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을 따른다.

③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교직원 복무규정」을 따른다.

④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「교직원 보수규정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 8. 31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